

#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규정

제정 2018. 12. 10

## 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학교 생활 지원 업무를 신속,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센터는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(이하 '센터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 (소속 및 소재지) 본 센터는 국제교육처에 소속하며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.

## 제2장 센터장 및 직원

제4조 (조직)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직원 또는 약간 명의 연구원을 둔다.

제5조 (센터장)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조교) ① 본 센터의 행정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조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## 제3장 업무

제7조 (업무)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.

- ① 외국인 학생의 비자발급 및 연장 안내 업무
- ② 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상담 및 지원
- ③ 외국인 학생 기숙사 생활상담 및 지원
- ④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
- ⑤ 기타 위 업무의 부수되는 사항

## 제4장 재정과 회계

제8조 (재정) 본 센터의 운영경비는 국제교육처에 배정된 교비예산으로 충당한다.

제9조 (예산, 결산) 본 센터의 예산편성,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5장 운영위원회

제10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운영 위원회(이하'운영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
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 중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 (회의)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2조 (시행)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13조 (운영세칙) 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